



Korean Tax Update

Samil Commentary

May 15, 2019

[대손금 관련 법인세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외국환거래규정 개정](#)

[AEO 공인 인증,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

[최신 세무예규판례](#)

ch 최신 예규판례

대손금 관련 법인세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기획재정부는 개인의 조기 신용회복 지원을 위하여 신용회복위원회가 추진하는 개인 워크아웃에 대해 세법상 애로가 없도록 「법인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여 5 월 3 일부터 입법예고함. 현재 금융기관 등의 채권은 12 개월 이상 연체되어 추정손실로 분류되거나, 법원의 회생계획인가 결정, 소멸시효 완성(상법의 경우 5 년) 등의 경우에 세법상 비용으로 공제되고 있음. 그러나 12 개월 이상 연체되거나, 법원의 회생계획인가 결정 등의 시점까지 장기간 기다리기보다 조기에 개인의 채무구조조정을 지원할 경우 신용회복의 가능성이 더욱 높아질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채권이 90 일 이상 연체될 경우 곧바로 신용회복위원회가 채권단과 신용회복지원협약을 체결하여 채권 원금을 감면하는 등의 신용회복제도를 운용하기로 함에 따라 세법상으로도 원금이 감면된 채권에 대해 대손금 비용공제 허용을 추진함.

시행령이 개정될 경우 적용시기를 최대한 앞당겨 영 개정 전에 신용회복지원협약을 체결하였더라도 영 개정 이후 면책으로 확정되면 비용공제가 적용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임.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입법예고(2019.5.3.~2019.6.12) 후 차관·국무회의를 거쳐 2019 년 6 월 중 개정을 완료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임.



삼일회계법인

외국환거래규정 개정

5월 3일부터 외환거래 분야 핀테크 스타트업을 활성화하고 금융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외국환거래규정 개정안이 시행됨. 기획재정부는 올해 1월부터 획기적 규제혁파의 일환으로 공무원이 규제의 필요성을 직접 입증하는 '규제 입증책임 전환제'를 시범실시한 결과, 국민생활·기업활동과 밀접한 외국환거래 분야에서는 총 125건의 규제를 발굴, 이 중 32건을 폐지·개선하기로 결정함.

금번 외국환거래규정 개정은 '규제입증책임전환제' 실시의 후속조치로써, 일반국민의 외환거래 편의를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 (신산업 촉진) 소액해외송금업체를 통한 선불 전자지급수단의 해외송금 허용, 무인환전기기를 통한 환전가능 금액 한도 상향(동일자·동일인 기준, 1천불 → 2천불)
- (금융업 경쟁력 강화) 자산 1조원 이상 저축은행의 해외 송금·수금 업무 허용, 증권사·카드사의 해외 송금·수금 한도 상향(건당 3천불 → 5천불, 연간 누계 3만불 → 5만불)
- (외환거래 편의 제고) 현재 3년인 해외이주비 송금기한 연장 허용, 해외부동산 취득 시 20만불의 계약금 송금 한도 폐지

소액해외송금업 자본금 요건 완화(20억원 → 10억원), 소액해외송금업의 송금·수금 한도 상향(건당 3천불 → 5천불, 연간 누계 3만불 → 5만불) 등 외국환거래법 시행령의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입법예고 등을 거쳐, 상반기 내 개정을 완료할 계획임. 또한, 각 부처가 시행중인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추가 제도개선 과제를 지속 발굴해 나갈 계획임.

AEO공인 인증,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

관세청은 수출입안전관리 우수공인업체(AEO) 인증을 받은 298개 수출입기업이 지난 한해 약 3,577억원의 경제적 혜택을 누린 것으로 분석·발표함. AEO (Authorized Economic Operator)란 관세당국이 법규 준수, 안전관리 등을 심사하여 공인한 우수업체로, 신속 통관 등의 혜택이 부여되며, AEO MRA (AEO Mutual Recognition Arrangement, 상호인정약정)는 자국에서 인정한 AEO 업체를 상대국에서도 인정하고 상호합의한 세관 절차상 혜택을 제공하는 관세당국간 약정을 말함.

관세청의 AEO로 인증 받은 기업은 국내 뿐 아니라 '상호인정약정'을 체결한 미·중·인도 등 20개 주요 수출국에서도 통관절차상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음. AEO인증을 받은

'수입기업'은 작년에 검사비용 절감 등 기업당 연간 약 10.3억원의 혜택을 받았으며, '수출기업'의 경우 현지 통관비용 절감 등 기업당 연간 약 7.4억원의 혜택을 받았다고 함. 관세청은 AEO인증과 상호인정약정 체결 확대를 적극 추진해 나가고 있음.

최신 세무예규판례

[파기환송] 외국선주사가 선박건조계약 해제에 따라 지급받은 선수금이자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국내조선사와 외국선주사간 선박건조계약이 해제됨에 따라 외국선주사가 선수금과 그에 대한 이자인 선수금이자를 지급받은 경우 해당 선수금이자 가 위약금 또는 배상금으로서 '본래의 계약내용이 되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어 배상받는 금전'에 해당하여 외국법인의 국내원천 기타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는지가 이번 사건의 쟁점임.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외국법인이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국내에서 위약금 또는 배상금 명목의 돈을 지급받았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계약과 관련하여 순자산의 감소를 일으키는 현실적인 손해에 대한 전보 범위 내라면 '본래의 계약내용이 되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어 배상받는 금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관련 법리를 실시하면서, 선수금이자 는 외국선주사가 통상적으로 부담하는 금융비용을 벗어나지 않으므로 실제로 발생한 순자산 감소를 회복시키는 손해배상금에 해당한다고 판시하면서 선수금이자를 국내원천 기타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다고 본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함. (대법2017두48482, 2019. 4. 23.)

이번 대법원 판결은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 위약금 또는 배상금의 의미를 명확히 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는 것으로 사료되며, 유사 사례의 경우 참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사료됨.

[국패] 용도폐지 정비기반시설의 취득이 무상승계취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르면 정비사업의 민간 사업시행자가 새로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은 국가 등에 무상으로 귀속되고, 용도폐지된 정비기반시설은 해당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도되는 것인바, 사업시행자가 취득하는 정비기반시설에 대하여 유상승계취득의 취득세율(4.0%)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무상승계취득의 취득세율(3.5%)을 적용하여야 하는지가 이번 사건의 쟁점임.

대법원은 사업시행자가 용도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을 국가 등으로부터 무상양도받을 뿐이고 그에 대한 대가를 출연하거나 소유권을 창설적으로 취득한다고도 볼 수 없으므로, 사업시행자의 용도폐지 정비기반시설에 대하여 무상승계취득의 취득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설시하면서 원고 승소 판결함. (대법2017두66824, 2019. 4. 3.)

그동안 용도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의 취득세율을 결정함에 있어 해당 취득이 원시취득, 무상승계취득, 유상승계취득 중 어떠한 것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논란이 있어 왔으나, 무상승계취득에 해당한다는 이번 대법원 판결로 인하여 그간의 논란이 종식될 것으로 사료됨.

Contacts

국제조세

이중현
709-0598
alex.lee@pwc.com

김상운
709-0789
sang-woon.kim@pwc.com

이상도
709-0288
sang-do.lee@pwc.com

이동복
709-4768
dongbok.lee@pwc.com

정종만
709-4767
chong-man.chung@pwc.com

신현창
709-7904
hyun-chang.shin@pwc.com

조창호
3781-3264
changho.jo@pwc.com

오남교
709-4754
nam-gyo.oh@pwc.com

서백영
709-0905
baek-young.seo@pwc.com

차일규
3781-3173
il-gyu.cha@pwc.com

김광수
709-4055
kwang.soo.kim@pwc.com

류성무
709-4761
seongmoo.ryu@pwc.com

김영옥
709-7902
young-ok.kim@pwc.com

로버트브로웰
709-8896
robert.browell@pwc.com

내국세

오연관
709-0342
yeon-gwan.oh@pwc.com

이영신
709-4756
young-sin.lee@pwc.com

김진호
709-0661
jin-ho.kim@pwc.com

황철진
709-0759
chul-jin.hwang@pwc.com

정복석
709-0914
boksuk.jung@pwc.com

남형석
709-0382
hyungsuk.nam@pwc.com

남동진
709-0656
dong-jin.nam@pwc.com

나승도
709-4068
seungdo.na@pwc.com

노영석
709-0877
yongsuk.noh@pwc.com

정선흥
709-0937
sun-heung.jung@pwc.com

조성욱
709-8184
sung-wook.fs1.cho@pwc.com

신윤섭
709-0906
yoon-sup.shin@pwc.com

선병오
3781-9002
byung-oh.sun@pwc.com

장현준
709-4004
hyeonjun.jang@pwc.com

최유철
3781-9202
yu-chul.choi@pwc.com

이전가격 & 국제통상

이희태
3781-9083
heui-tae.lee@pwc.com

헨리 안
3781-2594
henry.an@pwc.com

전원엽
3781-2599
won-yeob.chon@pwc.com

조정환
709-8895
junghwan.cho@pwc.com

해외투자 세무자문

김주덕
709-0707
michael.kim@pwc.com

세무진단 및 세무조사지원

김성영
709-4752
sung-young.kim@pwc.com

M&A 세무

정민수
709-0638
minsoo.jung@pwc.com

최혜원
709-0990
hyewon.choi@pwc.com

해외파견 세무 및

기업운영지원

박진아
709-0797
jina.park@pwc.com

상속증여 & 주식변동

이현종
709-6459
hyun-jong.lee@pwc.com

지방세

조영재
709-0932
young-jae.cho@pwc.com

사모펀드에 대한 M&A 세무자문

탁정수
3781-1481
jeongsoo.tak@pwc.com

금융세무

박태진
709-8833
taejin.park@pwc.com

정훈
709-3383
hoon.gp6.jung@pwc.com

비영리법인 지원센터

변영선
3781-9684
youngsun.pyun@pwc.com

중소기업 · 스타트업지원센터

김봉균
3781-9975
bong-kyoon.kim@pwc.com

Knowledge & Innovation

조한철
3781-2577
han-chul.cho@pwc.com

삼일인포마인

송상근
709-0559
sang-keun.song@pwc.com

삼일세무법인

정찬우
709-0692
thomas.chanu.chung@pwc.com

피더블유씨 관세법인

이영모
3781-3140
youngmo.lee@pwc.com

